

직제 규정

제정	2009. 05. 27.
개정	2009. 12. 18.
개정	2011. 01. 06.
개정	2012. 01. 05.
개정	2012. 05. 03.
개정	2013. 02. 07.
개정	2013. 11. 18.
개정	2013. 12. 31.
개정	2014. 02. 27.
개정	2015. 02. 26.
개정	2015. 12. 21.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원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진흥원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진흥원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원장 직속의 홍보협력팀, 감사실, 신사업개발TFT를 두고, 원장 산하에 부설기구로 Cel아카데미를 편제한다. <개정 2012.5.3.> <개정 2013.11.18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5.12.21.>

② 제1항에 따른 조직의 편제는 8본부, 2단, 1국, 1감사실, 1부설기구를 두며, 산업융합부원장은 융합전략기획본부, 콘텐츠코리아랩본부, Cel벤처

단지본부, 글로벌사업본부,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관장하고, 산업진흥부원장은 콘텐츠진흥1본부(방송게임), 콘텐츠진흥2본부(대중문화), 문화기술진흥본부, 산업진흥정책본부를 관장한다.

<개정 2011.1.6.> <개정 2012.5.3.> <개정 2013.11.18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5.12.21.>

③ 원장은 특별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으며, 이의 운영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진흥원은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, 부설기관 혹은 지부 등을 둘 수 있다.

⑤ 부설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5.12.21.>

제4조(기구 및 정원) ① 진흥원의 기구 및 직원의 정원은 <별표 1.> 및 <별표 2.>와 같다. <개정 2013.11.18.> <개정 2015.2.26.>

② 부서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.

③ 기구 및 정원의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개정 2012.5.3.>

제 2 장 보직 등

제5조(부원장) 부원장의 직무는 상임이사가 담당하며, 원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지휘한다.

제6조(실 · 본부 · 국 · 단장) ① 실(본부), 단(국)에는 실(본부)장, 단(국)장을 두며, 실(본부)장, 단(국)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1.1.6.> <개정 2014.2.27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5.12.21.>

② <조항 삭제 2011.1.6.>

제7조(감사실) ①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실장을 둔다. <개정 2014.2.27.>

② 감사실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내부감사규칙으로 정한다.

<개정 2014.2.27.>

제8조(보임) ① 부서장이라 함은 팀(센터)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.

<개정 2015.2.26.>

- ② 제1항의 각 부서장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부서장은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소관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) ① 원장은 진흥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서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직무대행) ① 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2항의 직제순으로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원장의 부재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1.1.6.> <개정 2012.5.3.>

- ② 부원장 및 부서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직제 순에 따라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직무 대행자를 따로 지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2.5.3.> <개정 2015.2.26.>

제 3 장 업무 분장 등

제11조(업무분장)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정원외 근로자) ①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에 계약제 근로자 등을 고용할 수 있다.

제13조(보칙)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3.11.1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5.02.26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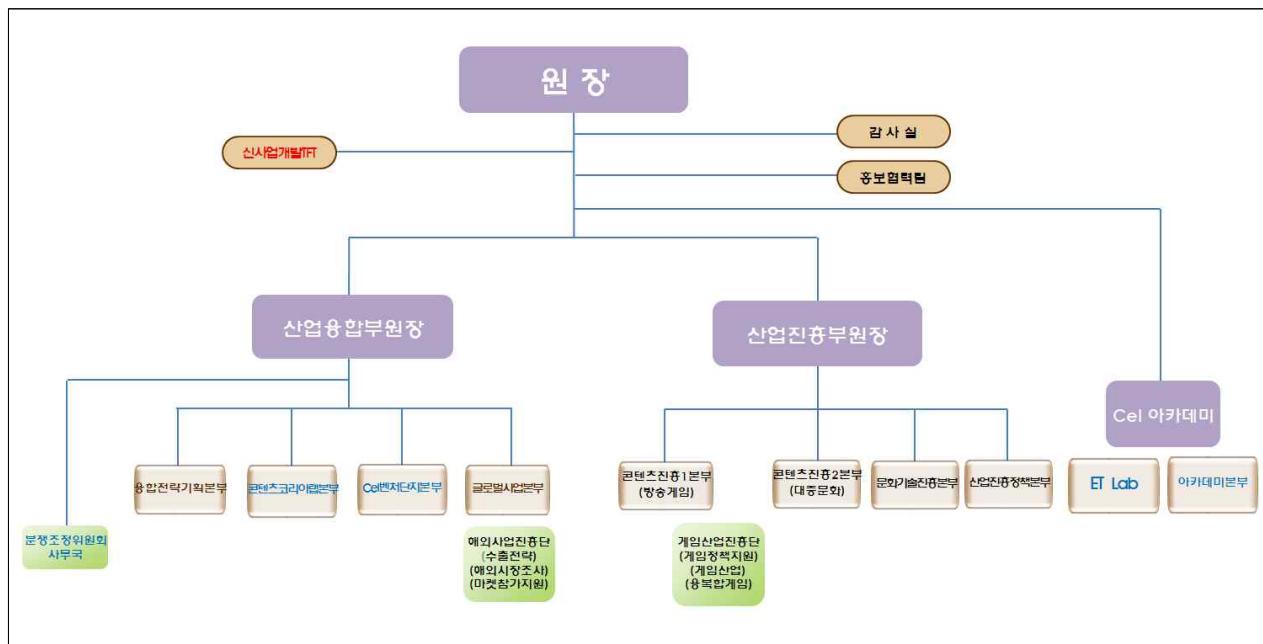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5.12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 기구표 <개정 2013.11.18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5.12.21.>

8본부, 2단, 1국, 1감사실, 1부설기구



〈별표 2〉 <개정 2013.2.7.> <개정 2013.12.31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5.12.21.>

정 원 표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임원	직원
계	<u>229</u>	3	<u>226</u>
원장	1	1	-
상임이사	2	2	-
B.U.M.*(실(본부)장급)	6	-	6
G1***(위원급)	<u>18</u>	-	<u>18</u>
G2(수석급)	<u>43</u>	-	<u>43</u>
G3(책임급)	<u>58</u>	-	<u>58</u>
G4a(선임급) G4b(주임급)	<u>101</u>	-	<u>101</u>

* Business Unit Manager

** Grade 1